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등을 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추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사업을
기금 용도에 신설〉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54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등을 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추가하고, 불공 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사업을 기금 용도에 신설	2
※ 참고자료	10
1.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개요 및 현황	10
2.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 현황	11
3. 과징금을 기금 재원으로 한 입법 참고사례	12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현황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2.
3. 회부연월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있음.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액 청구 등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최종 선고까지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징금을 추가하고, 이를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Ⅲ. 검토의견

1.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등을 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추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사업을 기금 용도에
신설(안 제20조의5제3항 등)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 조성방법으로 추가하고, 동 기금의 용도로 현행법 등의 위반으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상생협력기금은 <u>내국법인 출연금</u> 등으로 조성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④ <u>제3항</u> 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다음 각 호의 재원</u> -----. 1. <u>내국법인의 출연금</u>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u>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4.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u> ④ <u>제3항제1호</u> ----- -----.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7. (생략)	----- -----. ⑤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사업 7.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	---

현행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조성된 민간기금으로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기술협력 촉진 사업, 인력교류 확대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¹⁾. 동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며, 2023년까지 누적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조 6,563억원이 출연되었고, 중소기업 약 57만 7,437개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조 3,150억원이 사용되었음(참고자료 1).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²⁾」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³⁾」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범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우 해당 사업자 등이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심사를 거쳐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를 의미함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된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어 국고에 귀속되므로, 해당 과징금을 통해 법률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인력·자금력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장기간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 피해의 발생이나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고, 동 기금을 피해 기업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422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탁·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소송비용 지원, 법률 자문지원, 공정거래교육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원 건수 및 금액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참고자료 2).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기금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⁵⁾을 감안하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표 1] 중소기업 지원 관련 주요 기금 현황

종류	주요 사업 목표	운용부처
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영기반 확충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	중소기업벤처부
기술보증기금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고,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2024년 예산액 632백만원) 외에는 관련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중소벤처기업부).

먼저, 특정 목적 및 용도를 가진 기금의 조성재원 중 하나로 과징금을 규정한 대부분의 기존 입법례(참고자료 3)와 달리 개정안의 경우 과징금의 징수주체(공정거래위원회)와 기금의 관리주체(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가 다름. 또한, 해당 입법례에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반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민간단체⁶⁾가 관리·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 과징금을 기금 재원으로 규정한 입법례

근거 법률	기금명	기금 성격	기금 관리·운용 주체	과징금 징수주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금	국가재정법상 기금 ⁷⁾	보건복지부장관 ※ 일부업무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 ⁸⁾	시·도 및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전기사업법	전력산업기반 기금	국가재정법상 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부업무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진흥기금	국가재정법상 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시·도지사

다음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과 달리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및 국회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

6)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재단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7)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8) (예시)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되지 않음. 동 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 부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 입법례 및 부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징수된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유용한 조치임에 공감하나,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를 제기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가해자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대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해당 과징금으로 중소기업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③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같은 민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⁹⁾, ④ 징수된 과징금을 입법목적,

소관 부처 및 법률 적용 대상 등이 다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기금 조성 및 피해구제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무부는 ①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입법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용하면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관리·운용 관련 상세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외에는 관리 및 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②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를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피해 기업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해당 법률들의 규율범위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기업의 기준 및 식별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¹⁰⁾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467

9)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금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게 될 경우, 국고로 귀속될 과징금 규모가 감소하게 됨(국회예산정책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p1).

10) 법무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조치요구를 받거나, 같은 법 제28조의2의 벌점을 받은 경우 등으로 식별방법을 규정하는 방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함.

【참고자료】

1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개요 및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협력기금 개요

- (개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 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 * 출연혜택 : 지정기부금 인정,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절감(출연금의 3배 인정), 동반성장지수 등 평가우대
-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0조의5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용도) 현행 상생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은 성과 배분, 기술협력 등 기금의 용도 13가지*를 열거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
 - * 기금 용도: ① 성과배분, ② 기술협력, ③ 인력교류, ④ 환경경영협력, ⑤ 임금격차완화, ⑥ 기금 운용, ⑦ 생산성향상, ⑧ 기술보호, ⑨ 창업지원, ⑩ 판로확대, ⑪ 거래공정화, ⑫ 문화확산 ⑬ 벤처펀드 출자
- (운영절차) 출연기업이 중소기업 지원과제(용도, 내역 등 계획)를 추천
→ 중소기업이 과제를 수행 →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기금 지급

□ (현황) '11~'23년까지 누적 2.6조원 출연, 2.3조원 지원

< 상생협력기금 연도별 출연현황 >

(단위: 억원, 개사)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연 금액	순증	1,134	285	841	1,299	1,424	1,500	1,572	2,013	2,007	2,572	3,683	4,363	3,870
	누적	1,134	1,419	2,260	3,559	4,983	6,483	8,054	10,067	12,074	14,646	18,330	22,693	26,563
지원 (누적)	금액	134	466	1,254	2,545	3,993	5,436	6,951	8,790	10,494	12,788	15,362	18,788	23,150
	기업	183	1,049	3,773	8,430	14,744	24,990	34,084	43,561	71,680	158,227	268,709	422,198	577,437

<상생협력기금 용도별 지원 현황(누적)>

(단위: 억원, '23년 말 기준)

구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성과의 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확대	판로 확대	창업 지원	문화 확산	환경 경영	기술 보호	기타	합계
금액	5861	5249	4333	3654	2300	642	513	470	104	7	16	23,150
비중	25.3%	22.7%	18.7%	15.8%	9.9%	2.8%	2.2%	2.0%	0.4%	0.03%	0.07%	100%

2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 현황(일반회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수·위탁 분쟁조정 사건접수·처리 현황

- 최근 5년간 총 343건을 접수하여 조정성립 136건, 조정불성립 30건, 기타 사유로 종료* 174건, 각하** 3건으로 처리

* (종료(기타) 사유) 신청인 취하, 조정 거부, 2회 이상 자료제출·출석·송달불능 등

** (각하 사유)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청, 분쟁 사안이 아닌 신청

[최근 5년간 수·위탁 분쟁조정 사건접수·처리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분쟁조정 접수(건)	38	47	84	87	87	343
조정성립	8	19	42	38	29	136
조정불성립	2	4	9	7	8	30
종료(기타)	28	24	33	42	47	174
각하	-	-	-	-	3	3
조정중	-	-	-	-	-	-

□ 소송비용 지원 현황

- 소송비용 지원제도가 도입된 '22년부터 '23년까지 총 9개 사 지원, 지원금액은 42,180천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2년	'23년	계
지원건수(개사)	5	4	9
지원금액(천원)	25,180	17,000	42,180

□ 법률자문 현황

- 법률적 대응역량이 취약한 피해기업의 지원을 위해 재단 소속 전문위원(변호사) 및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총 78건의 법률자문 시행

[최근 5년간 법률자문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법률자문(건)	3	10	14	48	3	78

□ 공정거래교육 운영 현황

- 교육명령 행정처분 대상기업에 총 14회,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의 교육 신청으로 63회 진행하여 최근 5년간 총 77회 실시

[최근 5년간 공정거래교육 운영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공정거래교육(회)	37	8	7	9	16	77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벌점기업 대상)	1	3	4	3	3	14
기업 신청 교육(대기업, 중소기업 대상)	36	5	3	6	13	63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기존 입법 사례는 과징금과 기금 조성 관련 법률의 소관 부처가 동일한 경우이나, 해당 발의 법안은 과징금(공정위)과 기금 조성(중기부) 관련 법률의 소관 부처가 다름

기금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응급의료 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1.8.4 개정)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 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u>과징금</u> 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u>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u>
식품진흥 기금	식품위생법 (2018.3.13. 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 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 20조에 따라 징수한 <u>과징금</u> 3. <u>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4.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u>
전력산업 기반기금	전기사업법 (2010.4.12. 개정)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u>과징금</u> 3. <u>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u> 4.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u>
언론진흥 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0.3.3. 개정)	법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u>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u> 시행령 제27조(언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 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u>과징금</u> 2.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입금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입금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정위 과징금 부과현황(공정위, 2023년 기준 통계연보 가공)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의 최근 5년간 총 2조 5,781억원 부과

* ('19) 1,211 → ('20) 3,280 → ('21) 9,929 → ('22) 7,921 → ('23) 3,441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합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88~'95	160	14,302	0	0	160	14,302
1996	22	16,275	0	0	22	16,275
1997	9	1,190	0	0	9	1,190
1998	62	136,113	4	63	66	136,176
1999	79	141,704	5	126	84	141,830
2000	45	225,465	0	0	45	225,465
2001	82	161,654	0	0	82	161,654
2002	82	82,798	0	0	82	82,798
2003	32	149,619	1	8	33	149,627
2004	89	35,838	0	0	89	35,838
2005	264	258,926	2	48	266	258,974
2006	146	155,940	4	97	150	156,037
2007	316	420,712	6	2,533	322	423,245
2008	102	246,201	22	17,998	124	264,199
2009	61	366,199	10	4,602	71	370,801
2010	56	607,114	5	718	61	607,832
2011	143	604,252	9	1,921	152	606,173
2012	60	495,944	16	10,072	76	506,016
2013	64	389,958	15	28,139	79	418,097
2014	83	785,234	20	10,445	103	795,679
2015	109	560,306	56	8,152	165	568,458
2016	70	775,026	27	4,364	97	779,390
2017	78	1,276,615	37	9,615	115	1,286,230
2018	120	290,814	28	11,000	148	301,814
2019	69	94,136	55	26,934	124	121,070
2020	72	288,797	18	39,193	90	327,990
2021	85	970,106	25	22,796	110	992,902
2022	64	761,809	23	30,286	87	792,095
2023	73	339,404	12	4,681	85	344,085
합계	2,697	10,652,451	400	233,791	3,097	10,886,242